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 · 회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회계 · 계약 운영 관련

1.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 의】

○ 당해공사 계비온설치 공정 중 돌망태 속채움돌을 현장채집하여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현장채집이 불가능하여 구입시공으로 변경 시공하게 되어 설계변경 하고자 할 때 구입에 따른 운반거리의 재조정이 불가피하여 이를 설계변경하여 단가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 가능 여부

○ 야면석의 찰쌓기 및 돌붙임의 공정 중 소요되는 터파기, 뒷채움, 돌채집, 운반, 쌓기 등의 여러 품이 소요되나 이중 일부의 공정이 누락되어 설계된 공정을 삽입 설계된 공정을 삽입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며

○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의 규정에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사항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내용 및 현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3년간 업종별 시공실적 및 접근성 평가방법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 전문건설 1억원 이하 공사입니다. ○○시 발주 공사이고, 저희 회사는 △△시입니다. 1순위 낙찰로 됐는데 접근성이 0.2점 빠져서 불낙찰이란 연락을 받았습니다. 3년간 실적은 2004년까지 하면 가능합니다.

1. 2004년 까지의 실적적용이 가능한지?
2. 접근성(0.2)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3. 현재실적이 6000만원이라면 지자체 발주 공사는 1억~1억2천만 입찰을 보아야 하는지?
- 입찰일 : 2005. 04. 01

회 신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61호)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2004년도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해당 업체가 ○○시에 주된 사무소(본사)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 접근성(0.2점)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 3에 대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다만 귀하가 1억이상 1.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서 단점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공사 추정가격의 50%이상 실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3. 물품구매입찰 재무상태 평가에 관한 질의

【질 의】

- 질의 1)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최근 1회계연도의 연말결산서 제출시에는 동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 받은 것)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최근1회계연도의 연말결산서”란?
- 질의 2) :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 평가 시 업종평균을 적용 기준은?
- 질의 3) : “법인세법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에는 ?

회 신

- 질의 1·3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8호) 제7조 제2항에 적격심사대상자의 재무제표는 최근 1회계연도의 결산서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기준 제4조 제1호에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산이 가능한 최근 1회계연도의 기간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회계년도에 해당하는 기간계산을 하여 동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결산서를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38호) 제4조 제4호에 재무상태 평가 시 기준으로 하는 당해업종 평균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중분류업종의 해당 자료를 적용하며 입찰공고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수의계약 구비 서류 관련 질의

【질 의】

- 수의 계약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수의계약 시 계약이행 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하게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요?

또 어디서 그런 기준을 찾아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면제받게 되면 면제받게 되었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하나요?
 또 수의계약할때도 청렴이행각서를 써야하나요?
 공사비 지출 시 지출증빙서에 갖춰야할 서류에는 어느 것이 있나요?

회 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소액으로 인해 면제되는 계약 보증금과 3천만원 이하의 계약이행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3천만원 이하(하자보증금은 미만)

○ 청렴이행각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발주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 공사비 지출 시 지출증빙서에 갖춰야할 서류

-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청구서 내용이 잘못된 경우 반송)
-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같음
 -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 3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기타 대금지급에 필요한 자료

5. 물품구매입찰 경영상태 평가에 관련 질의

【질 의】

○ 입찰현황

- 건 명 : 차선도색도료 구매 연간 단가입찰
- 공 고 일 : 2005. 3. 18
- 개 찰 일 : 2005. 3. 29

○ 질의내용

- 위 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8호) 제7조 제2항이 최근 1회계년도는 몇 년도 입니까?

회 신

○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38호) 제7조 제2항에 적격심사대상자의 재무제표는 최근 1회계년도의 결산서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기준 제4조 제1호에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산이 가능한 최근 1회계년도의 기간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회계년도에 해당하는 기간계산을 하여 동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결산서를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6. 하도급직불실적 관련 질의

【질 의】

○ 행자부예규 제160호, 제161호의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기준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의 평가가 적용되는 바, 관련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도급직불실적을 신고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기준에 의거 하도급관리 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항목 중 최근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점수를 보면 직불실적이 10%미만인 경우 0.5점의 배점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20억 이상 관급공사의 하도급실적이 있는 업체가 대한건설협회에 직불실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즉 대한건설협회에서 평가를 확인 받지 못하는 경우, 이 업체는 10%미만에 해당하여 0.5점을 취득하는지(이 경우라면 0.5점은 기본점수라도 할 수 있을 것임)

질의 2) 1)에서 10%미만이라도 반드시 직불실적신고를 한 경우 즉 대한건설협회에서 10%미만이라면 확인서를 꼭 발급 받아야만 0.5점을 취득하는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61호) <별표 6-1>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가 업체별로 20억원이상 공사 목록 및 하도급계약 내역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것이며, 하도급직불 실적이 없는 경우 0.5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시공실적제한공사의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질 의】

○ 입찰공고 현황

- 추정가격 : 5,688백만원
-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정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지자체출연기관에서 발주한 1건의 공사로서 실내수영장 L=25m, 6레인이상 포함된 건축연면적이 5,337㎡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

②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만이 입찰참가가 허용되며 현장설명 참가자는 시공실적증명서(입찰 공고일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정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지자체출연기관에서 발주한 1건의 공사로서 실내수영장 L=25m, 6레인이상 포함된 건축연면적이 5,337㎡이상의 준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공사실적증명서(면적 필수 기재)은 반드시 공고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실적은 해당업체의 수급비율만 인정하고 장기계속 공사는 총공사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 A사에서 현장설명시 제출한 시공실적내용

- 공 사 명 : OO수련관 신축공사
- 시공실적 : 연면적 7,333.39㎡의 실내수영장 L=25m, 6레인이상 포함된 건축공사
- 공동도급비율 : A사 72%, B사 17%, C사 11%

○ 질의 1) A사가 위 실적으로 현장설명에 참여할 경우 (1) 전체공사 실적대비 72%는 5,280.04㎡이므로 공고상 명시된 5,337㎡에 실적기준 미달이므로 현장설명참가자격이 없는지?, (2) 또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61호, 2005.2.3) <별표 1> I-3-나-②-㉠규정을 적용하여 전체실적을 인정하여 현장설명 참여자격이 있는지 여부?

○ 질의 2) 만일 질의 1>의 (2)가 맞다면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에 적용될 수 있는 것 인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61호, 2005. 2. 3) <별표 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에서, 과거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시공한 실적이 당해 적격심사기준의 동일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과거의 공동수급체 구성상태가(구성원 및 시공비율 등) 동일한 상태로 다시 입찰에 참가한 경우 1건의 실적으로서 당해 실적 전체를 그 공동수급체 실적으로 그대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심사기준 <별지 1>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하는 경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입찰참가자격을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제한한 실적 인정범위·규모 등은 적격심사 시공실적 평가시에 적용하는 실적 인정범위·규모 등과 연계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별표 1> I-3-나-②-㉠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공동 수급체의 구성상태가 과거와 동일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준수해야 할것입니다.

8. 기술용역(감리) 입찰 및 적격심사의 적격여부 관련 질의

[질 의]

○ 우리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교 신축공사 상주감리용역을 발주, 입찰공고하여 개찰을 완료하였으나 적격심사 및 입찰공고사항의 적정여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용역발주 및 입찰공고 내용

- 용 역 명 : “가칭”○○학교 신축공사 상주감리용역(장기계속)
- 기초금액 : 117,050,000원(추정가격 106,409,090, 부가세 10,640,910원)
- 입찰 및 계약방식 : 지역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입찰,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 입찰참가자격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감리원 자격 및 배치기준 명시(보유인력기준은 참가자격으로 명시하지 않음)

- 건축부분 : 고급기술자 상주 감리
- 토목, 기계분야 : 중급기술자 비 상주하되, 당해 공사기간은 상주 감리
- 적격심사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자치부 162호 2005. 2. 3 적용)

나. 개찰상황

- 투찰업체수 : 48개업체
- 낙찰하한가 이상 투찰 업체 : 11개 업체
- 낙찰하한가 미달 투찰 업체 : 37개 업체

《질의사항》

1. 입찰공고 상 공동수급이 가능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와 토목, 기계분야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이 가능한 지의 여부
2.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정한도액(제5조 관련)“별표 1” 5호(추정가격 2억 미만인 용역)의 심사항목에는 없으나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인력배치기준에 의하여 기술인력보유상황을 제출 받아 보유인력이 없는 경우 부적격 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보유인력기준을 참가자격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및 심사항목에 없음으로 기술인력보유에 관계없이 적격심사결과 적격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3. 낙찰하한가 이상 업체의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순위에 제한이 있는 지와 위와 같이 11개업체가 낙찰하한가 이상으로 10개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되거나 적격심사서류 제출포기 시 11순위 업체를 상대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받아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가능한 지의 여부.
4. 입찰공고 시 기술인력 보유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개찰당시까지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보유하지 않았으나 적격심사 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제출한 경우 인정 여부

회 신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제70조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3호의 규정에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7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

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공고문에 위 사항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당해 용역수행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필수감리인력을 제외하고는 입찰참가자격으로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한, 기술인력보유상황을 적격심사기준에 심사항목이 없는 경우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2인 이상 경쟁입찰에 참여한 경우라도 유효한 입찰이 되는 것임

질의 4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조 및 제21조에 필요한 자격은 등록마감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입찰무효 사유가 되는 것임.

9. 시공실적 인정 관련 질의

【질 의】

○ 일반건설업체가 과거에 도급 받은 상수도시설 공사중 일부분(제당시공부분)을 일반건설업자에게 100%하도급을 주었고 제당높이로 시공실적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에 참여할 경우 하도급한 내용의 실적 인정방법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36호, 현행 161호) <별표 1> I-3-나-③-④에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0. 기술용역 이행실적 관련 질의

【질 의】

○ △△시에서 발주한 도로명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위한 DB 구축사업 1순위 업체로부터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입찰 참여자격 공고사항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 24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구축

및 시스템 구축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 자격을 두었습니다.

《질문 사항》

1. 위 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시로부터 발주한 위건과 유사한 사업”을한 국지리정보조합협동조합이 수주, 위 조합으로부터 배정 받은 업체의 하도급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였던 자로.

2.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를 조합에서 배정 받은 업체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된 사항으로 “이 증명서가” 적격심사 자료로 인정이 되는지요?

(갑 설)

지방자치(기초)단체에 또는 국가지정 단체에서 발행하지 않은 실적증명서는 인정할수 없음.

(을 설)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62호) 별지 3 서식의 주 1) 기재사항: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함. 이란 규정을 들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실적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이견된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 신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62호) 〈별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주2)의 규정에 “당해용역 이행 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귀 질의 경우 한국지리정보조합협동조합이 수주, 위 조합으로부터 배정 받은 업체의 하도급을 맡아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하도급을 인정하고 있고 하도급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외에는 실적 인정이 곤란할 것입니다.

○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관련) 제1호 라목의 규정에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정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게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물품구매입찰 관련 질의

【질 의】

○ 우리 원을 비롯하여 타시도에서 업무의 특성상 실험의 정밀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사용자의 오랜 기간동안 실험 경험으로 특정상표 및 규격(회사 명칭 기재)을 명시하여 대부분의 물품을 전자입찰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에 있어서는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라는 회계 통칙(1992. 9. 23 회계2210-631) 예외 규정인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하여 특정상표 및 규격을 표시하여 전자입찰 구매 할 수 있는지?

회 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회계통칙(1992. 9. 23 회계 2210-631)에서 불가피한 경우란 “특정규격(모델)”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자격을 갖춘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경쟁의 방법등을 통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수의계약 가능여부 관련 질의

【질 의】 ○ 매장문화재 시(발)굴 업무는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시행 전에 시(발)굴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허가 시에 시(발)굴기관을 사전에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타 시·도에서도 문화재청에 시(발)굴 허가신청 시 지정된 시(발)굴기관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으로 보아 허가신청 시 기재된 지정기관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차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으로 시행할 경우 지정된 시(발)굴기관이 문화재청 심의기준에 미흡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재 선정에 따른 공기연장 및 발주처와 업체간 분쟁이 예상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구·

경북에 지정된 전문시(발)굴기관은 2개 기관 외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시(발)굴 허가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임.

○ 문화재청에서 기 허가된 시(발)굴기관을 특정인과의 학술용역 대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볼 수 있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전문시(발)굴 허가기관이 한정되어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지라도 일반경쟁에 의거 선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차목에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굴할 수 있는자가 전국적으로 다수 존재하는 경우라면 위 호에 의한 수의계약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3. 하자보수 관련 질의

【질 의】

○ 우리구 ○○동사무소는 2000년 3월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2000년 여름부터 흡수식 냉·온수기의 하자로 인한 냉방기 사용 불능과 기타 여러 가지 하자로 인하여 2003년 4월 46,500,000원을 들여 수리를 하였으며 시설 관리에 여러모로 피해를 입었던 상황입니다.

○ 또한 2004. 7. 28 지하 기계실의 급수배관(지하실에서 각층으로 공급되는 급수관)이 탈락 되어 많은 양의 물이 새어나와 MCC 판넬(전기공급장치)을 22,000,000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우리구에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물론 여름철이고 방문하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시공사 또는 연대보증업체에 사전에 연락을 취하지 않고(연락을 취하였다고 하여도 신속히 조치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04. 8. 30에는 청사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틀(약 40kg)이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서 큰 인명사고가 날 뻔하였고 창문틀 20여 곳이 틈새가 벌어지고 추가낙하사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 위 문제에 대하여 당초의 설계서와 비교한 바 설계서대로 시공한 것으로 기술진에

서도 확인하였으나 이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하자가 발생한 사항이므로 우리구에서는 2004. 9. 3 전문안전진단기관인 한국○○연구원에 의뢰하여 위 모든 사항이 하자사항으로 시공사 또는 연대보증업체에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회신을 받아 연대보증업체에 종합적인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연대보증업체에서는 당초 설계서대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조치만 할 수 있지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근본적인 하자조치(예를 들어 급수배관을 새로운 재질로 재시공 등)는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근본적인 하자조치는 연대보증사와 우리구간에 공사비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는 할 경우에만 하자보수에 응할 수 있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 또한 위의MCC 판넬의 누수로 인한 피해액 22,000,000원은 문제 발생 후 보수 시 사전연락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피해액을 보상하여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구에서는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첫 번째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하자사항에 대하여 연대보증사와 구청간에 공사비의 50%를 서로 부담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하자까지를 예상하여 근본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연대보증사에서는 이를 하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호간에 각각 50%씩 부담하는 조건으로는 수리할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다고 하고 현재 발생한 사항만 하자보수 조치할 수 있으며 앞으로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하자보수를 불가능하다고 연대보증회사에서 회신함.

- 두 번째 MCC 판넬 교체시 긴급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시공사나 연대보증사(당시에는 2회사 모두 폐업한 상태로 확인되었음, 그 후 새롭게 지금의 연대보증사가 보증회사로 계약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 연락을 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조치를 한 사항을 이제와서는 손해액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보상 자체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본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005. 5. 12까지이며 준공 당시 하자보험증권을 끊을 때 각 공종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5년 동안을 하자담보기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서 시공사는 설계서의 내용대로 시공을 하여야 하며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지 나타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에서 하자의 범위는 “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상의 잘못된 경우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설계서대로 시공하였으나 설계서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이거나 사용·관리상의 소홀로 인한 경우 등에는 하자보수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상황 등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당해 공사의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동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당해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4.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관련 질의

【질 의】

○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동일인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공정 등 제반 여건상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의 하도급 비율이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83.01%)은 변경 없이 차수 계약 시 당해 하도급자에 대한 전체 하도급계약 예정 하도급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 가능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③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은 하도급 관리 계획서에 의거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 바

○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하수급체와 당해 하도급계약을 차수별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도 당해 하도급자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적정한 하도급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공동계약 집행기준 관련 질의

[질 의]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시에도 공동계약이 가능한지요?

○ 행정자치부예규에 의하면 당해지역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품 구매의 경우에는 기준이나 제한이 없는것인지요?

○ 제조에 의한 납품설치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6호 라목에 의한 지역업체로 제한가능 여부.

회신

○ 지방재정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의계약시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경우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업체가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라면 당해업체와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16. 부도업체와 시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가능여부 질의

【질 의】

○ 지역제한경쟁전자입찰을 하여 낙찰1순위업체가 적격심사 결과 적격업체로 결정된후 계약체결 직전에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난 업체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 질의 1)

- ① 부도난 업체는 입찰의 무효 또는 계약체결의 결격사유로 보아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지?
- ② 발주자가 계약체결을 거부 할 수 있는지?
- ③ 부도난 업체가 계약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계약체결을 할 수밖에 없는지?

- 질의 2)

- ① 부도난 업체가 입찰의 무효 또는 계약체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를 한 후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② 발주자가 부도난 업체와 계약체결을 거부했을 경우에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를 한후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 신

○ 질의1)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의 규정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자 결정 이후 부도가 발생하였다면 낙찰자의 부도 상태, 현재의 계약이행능력, 향후 계약이행 가능성 등을 발주자가 종합 검토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2)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자부예규 제160호) 제8조 제3항에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선순위 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낙찰이 취소된 경우라면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7. 공동도급계약의 실적증명서 발급 관련 질의

【질 의】

○ 공동도급계약의 실적인정 방법에서 과거에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실제 시공한 내용대로(A사 : 도로 10km, B사 : 교량1km) 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가 A사가 교량 부분의 실적이 필요하여 기 발급된 시공실적증명서와는 달리 시공비율대로 시공실적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61호) <별표 1> I-3-나-②-①-1)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출자비율 범위내에서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각 구성원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부분(예: 구간·공종)별로 나누어 시공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날인하고 발주기관에서 증명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부분(구간·공종)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실적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으로 실적증명서가 발급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같은 실적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으로 실적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2개의 실적 중 하나는 실제 시공내용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된 증명서에 해당될 것입니다.

18. 내역입찰에 따른 내역서 정정에 대한 질의

【질 의】

○ 입찰내역서 작성시 공종에 해당하는 사급자재비 금액이 재료비란에 기재되어야 하나 노무비란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계약후라도 사급자재비 단가금액을 노무비란으로 정정이 가능한 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적용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 준용하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내역입찰 집행요령”제5조 제1항에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요령 제5조 제3항에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표기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 및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 참고로 동 요령에 의거 산출내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계약체결 이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19. 시공실적 인정범위 관련 질의

【질 의】

○ 참가자격 및 참여업체 현황

- 입찰참가자격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8,000㎡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실적은 당해지분만 인정합니다.

- 참여업체 과거 실적 : 9,000㎡(A사 대표사, B사 구성사, 시공비율 50:50%)

○ 폐사의 실적이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입찰에 시공비율 등 기타 조건의 변경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을 과거의 대표사를 구성사로 하고 과거 구성사를 대표사로 변경하였다면 1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61호) <별표 1> I-3-나-②-㉠에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시공한 실적이 당해 적격심사기준의 동일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과거의 공동수급체 구성상태(구성원 및 시공비율 등)가 동일한 상태로 다시 입찰에 참가한 경우 1건의 실적으로서 당해 실적 전체를 그 공동수급체 실적으로 그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과거의 실적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한 실적으로서 당해 입찰에 시공비율 등 기타조건의 변경 없이 과거의 대표사를 구성사로 하고 구성사를 대표사로 변경한 경우라면 1건 실적으로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